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21호 2025. 12. 15. (월)

고시 · 공고

○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

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에 따라, 다음과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5일

목 포 시 장

1. 지정목적 : 보행자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, 이 사실을 알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2. 관련근거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
3.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구간

연 번	위 치	상세 위치		도로폭 (m)	연 장 (m)
		시 점	종 점		
1	목포시 호남동 455	호남동 455	호남동 455	6~6.5	47

※ 문의사항 안내 : 목포시청 건설과 토목팀(☎061-270-3431)

4.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도

